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5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홍배·김주영·김성환

김한규 · 박해철 · 한준호

정진욱 • 민병덕 • 김현정

김준형 • 민형배 • 문대림

이수진 • 이연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 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 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3조 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시멘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시멘트를 제조		
	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		
	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		
	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		
	<u>개하여야 한다.</u>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4.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시		
	멘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u>		
	<u>자</u>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